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단1172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15.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5. 12. 1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390,09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90,0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화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법원행정처의 각 회보결과,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공명령에 대한 D조합, E기관의 각 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2015. 12. 10.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상속분할협약')는 C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분할협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 방법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액배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4,390,094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의 [C]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C]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의 [F]은행(구 [G]은행) 주식회사는 2011. 9. 27. 위 [C]에게 금 1,000만원을 여신기간만료일 '여신일'부터 36개월, 이자율 연 37.9%, 지연배상금을 '이자율 + 연 11%'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의 1, 2 각 신용대출여신거래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F](주)는 2016. 9. 7.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4086), 원고승소판결이 2017. 8. 30. 선고되어 2017. 9. 2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미지급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금 4,390,094원 및 그 중 금 1,331,910원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3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의 H이었는데, 위 H은 2015. 10. 14. 사망하였고, 위 C은 위 H의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위 H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축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15. 12. 1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실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위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바, 위 분할협의는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자 C의 어머니로 추정됩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위 C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위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까.

(2) 그런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위 사해행위 이후인 2018. 10. 22. '채권최고액 2,400만원', '근저당권자 D 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있어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뿐만 아니라 가액반환청구도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우선은 2020. 4. 21.까지의 원리금인 금 4,390,094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실심변론종결일에 맞추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증액하고, 그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의 범위를 특정하며,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기 제출한 소장 기재 내용을 원용합니다.

2. 상속지분 등의 특정

가. 피상속인 H은 2015. 10. 14. 사망하였는데, 당시 위 H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I'(피고, 수익자)와 자식인 'J', 'C'(채무자), 'K'이 있었습니다(갑 제6호증 기본증명서, 갑 제7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참조).

따라서 채무자 C과 피고는 모자관계이고, 위 C의 상속지분은 '2/9'입니다.

나. 망 H은 2015. 10. 14.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때는 '2015. 12. 10.'입니다(갑 제8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참조).

따라서 위 2015. 12. 10.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입니다.

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미 밝혔듯이 위 상속재산 중 2/9 지분은 소외 C이 상속받았어야 함에도, 위 상속인들은 위 부동산 전부를 피고만이 상속받는 것으로 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3. 책임재산의 범위 관련하여

가. 이 사건 소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행위 이후인 2018. 10. 22.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근저당권자 D조합), 원고는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실심종결시와 가까운 2020. 7.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금 90,000,000원입니다(갑 제9호증 국토교통부실거래가조회 참조),

따라서 위 부동산 가액 중 위 C의 상속지분 가액인 금 20,000,000원($90,000,000\text{원} \times 2/9$; 소수점이하 절사)이 위 부동산 중 채무자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 부분입니다.

다. 위 책임재산 142,702,444원과 위에서 밝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4,390,094원 중 더 적은 금액인 4,390,094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층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내지 3층 각 114.02㎡, 4층 107.1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 598.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51.8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98.4분의 38.06 끝.

